과 업 지 시 서

용 역 명	해상풍력 지원항만 실시 설계

Halla 목포신항만운영㈜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해상풍력 지원항만 실시 설계 용역

2. 추진 배경 및 목적

1) 현재 해상풍력단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물류관리 및 통합관제 체계가 미흡한 상황으로서, 풍력단지 조성시 요구되는 항만 및 물류(육상운송 및 해상운송 등), 적재, 기타 관리시설을 발전사업자 개별로 구축 시 비용 부담 증가로 풍력발전사업 경제성 및 경쟁력 저하 발생함.

2) 항만은 국가 공통·공용·장기적인 활용시설로서 공공 운영 시 해상발전 사업자 간 경쟁 완화, 해당권역(道 단위)내 지원항만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 제거, 관련 산업 육성 등의 국가 단위 경제 효과 제고가 가능함.

3) 기존 항만 및 배후단지를 활용함으로써 유휴 시설의 활용률을 높여 재정투입의 낭비를 막고, 해상풍력 발전 사업비 절감을 유도가 필요한 실정임.

4) 이에, 다양한 해상 권역으로 확산 가능한 내 3GW 이상의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하는 전용항만 설계·실시계획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3.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년 11월 15일 이내

4. 과업소요예산 : 581,519,000원(VAT 별도)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6.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1년 ~ 2022년(2개년)

나. 내용적 범위

1) 항만현황 검토
2) 해상풍력단지와의 거리 조사
3) 해외해상풍력지원항만 사례분석 및 적용방안
4) 항만 혼잡도, 항로조사 및 입출항시 제약 조건
5) 주변산업단지와의 연관성
6) 항만 및 배후단지 지내력 검사 및 검토(WTG 12㎿/기 기준)
7) 항만 안벽 구간 CPT(Cone Penetration Test), 조사구역 사전 협의
8) 해상풍력 유지관리 항만의 적합성
9) 해상풍력지원항만 최종 설계도서 작성(국문/영문)

Ⅱ. 과업수행

1. 예정공정표

구분	내용	1차년도 (~Y21.3)	2차년도 (Y21.4~12)	3차년도 (Y22.1~12)
해상풍력지원부두 개발계획 검토	권역별 해상풍력 개발계획 검토	V		
	입지조사(단지간 거리, 주변산업 등)	V		
	해상풍력지원부두 대상현황 분석 (항로, 혼잡도, 민원 등)	V		
해상풍력 개발계획 상세조사	해상풍력지원부두 상세조사 (면적, 지내력, 지질 등)		V	
	해상풍력지원부두 spec 검토 (소요면적, 필요 지내력 등)		V	
해상풍력지원부두 사업타당성 검토	해상풍력지원부두 건설·조성비용분석(신규건설시)			V
	해상풍력지원부두 경제성 분석 (해상풍력지원부두 선정)			V
보고	중간·최종보고	V	V	V

2. 과업보고

1) 수시보고

- 발주처 요청시 과업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함.

2)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안건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 내용에 반영해야 함.

3) 최종보고

- 마지막 용역 설계 이후 최종 수정 및 보완을 마친 분석보고서와 결과 파일을 담은 과업 수행 내용 및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한 최종보고서 제출

3. 성과품 제출

1) 계약완료일 30일 이전에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함.

2) 성과물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함.

구분	수량	비고
최종보고서	10부	계약 완료일까지 제출
기타자료(도면 등)	1식	계약 완료일까지 제출
자료파일	1식	최종보고서 파일,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담은 파일을 계약 완료일 까지 제출
그 외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용역 수행 결과물	1식	계약 완료일까지 제출

3) 성과물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겨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Ⅲ. 과업 수행의 일반 원칙

1. 일반지침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3) 용역 내용에 포함되는 자료 및 통계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는 출처 및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함.
4) 용역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조정하며 효율적인 용역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와 용역 진척 상황에 대해 필요시 업무 협의를 가짐.
5)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내용과 경미한 사항,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과업지침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동 과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함

2. 보완관리

1)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2)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3) 용역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서면을 발주기관에 통보 하도록 함.
4) 기타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3. 용역의 변경 조건

○ 용역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계약 기간, 용역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역 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 용역이 필요하게 된 경우
- 본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방침 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변경 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합의한 경우

4. 계약해지 및 기타사항

○ 용역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용역기관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